

1998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건의서

검사대표위원	강 석 주
검 사 위 원	김 종 득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강 태 영

목 차

1. 세입세출결산총괄

- 가. 세 입
- 나. 세 출

2. 일반회계

- 가. 세 입
- 나. 세 출

3. 특별회계

- 가. 세 입
- 나. 세 출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가. 기 금 총 괄
- 나. 채 권 현 재 액
- 다. 채 무 현 재 액
- 라. 공 유 재 산
- 마. 물 품 현 재 액

5. 세입세출외현금

6. 지적사항의 종합평가

- 지적사항 19건

'98회계년도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총 평》

1998년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 세입세출결산총괄

가. 세 입

(단위 원)

구 분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산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7)	116,560,560,000	153,723,025,692	150,871,561,510	49,034,170	2,802,429,992
당 해 년 도 ('98)	119,690,304,000	165,791,306,646	163,719,934,721	37,653,540	2,071,371,925

1) 세입세출개요

- 수납액은 1,637억 1,993만 4,721원은 예산액의 136%('97:129%)로서 440억 2,963만 721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97년도 98.1%)의 양호한 실적으로 나타남.

나. 세 출

(단위:원)

구 분	세출결산액	예산성립후결정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증 감 액
전 년 도 ('97)	116,560,560,000	33,215,525,421	164,018,000	(170,956,000)
당 해 년 도 ('98)	119,690,304,000	43,294,950,621	641,620,000	(327,727,000)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97)	149,776,085,421	99,359,029,185	43,294,950,621	7,122,105,615
당해년도('98)	162,985,254,621	118,729,906,547	35,294,388,100	8,960,959,974

구 분	잉여금잔액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전년도('97)	51,512,532,325	610,795,970	7,606,785,734
당해년도('98)	44,990,028,174	532,572,430	9,163,067,644

가) 세출결산개요

- 1) 예산액은 1,196억 9,030만 4,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32억 9,495만 621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은 6억 4,162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629억 8,525만 4,621원이었으며 예산전용액은 3억 2,772만 7,000원임
- 2)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2.8%('97:66.3)에 해당하는 1,187억 2,990만 6,547원에 불구하고 이월액은 352억 9,438만 1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1.5%로 감소하였음은 최소화 노력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

※ 이월액 5개년 추세

회계년도별	예산현액(a)	이월액(b)	a/b %	비고
1994	64,883,943	10,998,282	16.9	
1995	87,136,400	20,349,951	23.3	1/4육박
1996	115,796,857	33,215,525	28.6	1/4초과
1997	149,776,085	43,294,951	28.9	1/4초과
1998	162,985,254	35,294,388	21.6	1/5수준

3)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9%에 해당하는 89억 6,095만 9,974원이
였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에
기인함.**

4) **검정결과 결산계수의 조정**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와 대조한 결과
47건을 보완하여 결산계수를 조정하였음.

2. 일 반 회 계

가. 세 입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7)	102,654,879,000	136,989,774,491	134,275,544,437	49,034,170	2,665,195,884
당해년도 (‘98)	111,399,586,000	149,161,066,965	147,292,624,925	37,653,540	1,868,442,040
전년대비	8,744,707,000	12,171,292,474	13,017,080,488	△11,380,630	△796,753,844
(‘97:’98)	108.5%	108.8%	109.7%	76.8%	70.1%

1) 세입결산개요

- 가) 수납액 1,472억 9,262만 4,925만원은 예산액의 132.2%로서 358억 9,303만 8,925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여자금의 고율의 정기예탁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증가와 전년도사업비 이월,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기인함.
- 나)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은 98.7%로서 전년도 보다 9.7%가 높아 졌으며 불납결손액은 3,765만 3,540원으로서 이는 세외수입 관공업수입 의료비 청구액 보험공사 심사에서 발생하였음.
- 다) 미수납액 18억 3,078만 8,500원의 사유는 거주불명 2,164만 2,140원, 무재산 3,058만 5,190원, 고질적체납 16억 9,692만 5,270원, 소송계류·이의신청 768만 2,000원, 기타 관공업수입 7,395만 3,900원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고질적체납 약17억원에 대하여 이는 자동차세 2억 6천만원, 지방세 과년도 미수 6억여원, 재산매각대 1억 2,400여만원, 과태료수입 1억 3,800여만원, 세외수입 과년도분 2억 9,800여만원으로서 특별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분발할사항임.

라) 각종 미수금에 대하여 '97년도보다 약 8억원이 감소 하였으나 과년도분에 대한 결손처분 대상을 과감히 처분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매처분 낙찰을 저조로 미수액이 남아있음.

2)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대화면에서는 수입증지, 팩스수수료 수납에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 관리하고 수입증지는 월1회, 팩스수수료는 분기별로 군 세입조치하고 있음.

별도관리규정이 없는 한 본 수수료를 별도 수납함은 부적정하므로 타기관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3) 금 고

가) 금고의 정기검사

평창군 금고 및 읍면 금고 지출대행점 정기검사 결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연이체에 대한 지적건수 62건 146,290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음.

군금고 검사결과 지적사항 없음

나) 잉여자금의 효율적 운용

○ 정기에탁

- 일반회계에서 8구좌 146억원, 특별회계에서 2구좌 45억원 등 총 10구좌 191억원을 환매채, 정기적금하여 이자소득 43억 5,000만원중 98년말 결산에 33억 7,000만원을, 9억 8,000만원은 99년도 이월분으로서 잉여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잉여보관금의 운용에서

'98. 7월부터 시행, '98년말 현재 환매채 7구좌 5억 7,000만원

을 예탁하여 2,448만 9,530만원의 이자를 발생, 군수입 증대에 기여하게 하였음. 이의 운용목적 군 수입은 물론 예탁자 보관금 청구시 이자지급 준비금으로도 대비하게 되며 98년말까지 예탁자의 청구 및 지급사실은 없었음.

4) 불납 결손처분에 있어

- 미수납액중 거소불명 575건 2,164만 2,140원, 무재산 182건 3,058만 5,190원이 있는바 이 가운데 정밀한 실태조사로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결손대상이 발생하고 있는지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분 관공업수입에서 3,765만 3,540원을 결손처분하고 있는 바, 이는 진료비 청구액중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심사결정으로 감액된 금액을 결손처분 한 것임.

나. 세 출

(단위 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증·감(△)액
전 년 도 ('97)	102,654,879,000	30,495,334,841	149,018,000	(168,622,000)
당해년도 ('98)	111,399,586,000	34,829,010,961	641,620,000	(327,727,000)
전년대비	8,744,707,000	4,333,676,120	492,602,000	(159,105,000)
('97:'98)	108.5%	114.2%	430.5%	194.3%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97)	133,150,213,841	92,222,243,250	34,829,010,961	6,098,959,630
당해년도 (‘98)	146,228,596,961	109,238,944,572	29,076,620,990	7,913,031,399
전년대비	13,078,383,120	17,016,701,322	△5,752,389,971	1,814,071,769
(‘97:‘98)	109.8%	118.4%	83.45%	129.7%

구 분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97)	42,053,301,187	596,813,000	6,627,477,226
당해년도 (‘98)	38,053,680,353	511,691,000	8,465,368.363
전년대비	△3,999,620,834	△85,122,000	1,837,891,137
(‘97:‘98)	90.4%	85.7%	127.7%

1) 세출결산개요

가) 예산액은 1,113억 9,958만 6,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48억 2,901만 961원이 이월되고 예비비사용액 6억 4,162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62억 2,859만 6,961원이었고 세출전용액은 예산액의 0.29%인 3억 2,772만 7,000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 내용은 체육관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부족, 이효석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및 가산공원 화장실 사업비 부족, 감자큰잔치 먹거리장터 운영비 부족, 오대천정비 설계용역비 부족, 봉산서계 개축사업비 부족, 본청 복리후생비 부족분등 14개 사업이고 예산액중 동일과목에서 50%이상이 5건과 100%전용액이 4건이 전용사용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전용4건, 과다전용 1건, 결산서 누락2건, 조서상 누락2건, 전용결의없이 전용사용 2건등 방만한 예산운용이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됨.

나) 예비비 사용에 있어

예비비사용액은 6억 4,162만원으로서 이중 사회진흥, 공공근로 사업비 1억 1,130만 3,000원은 당해년도 집행없이 명시이월 되므로써 예비비사용 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며 이밖에 노인봉 실종자 수색대 급식비 부족분을 비롯한 8건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긴급재해 발생에 따른 지출로서 적정하다고 봄.

다) 지출액에 있어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7%에 해당하는 1,092억 3,894만 4,572원이 었으며 이월액은 290억 7,662만 99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의회백서 발간 2,250만원외 52건에 223억 8,162만 1,550원이고 사고이월은 총44개 사업에 56억 4,346만 6,820원이였으며 주요내용은 평창택지 소송기각분 토지매입 협의지연과 동절기 공사중단, 사업계획 변경, 보조금지연, 건축법규개정, 국유림 협의지연등에 기인하며 계속비 이월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범공설묘지조성등 2개 사업에 10억 5,153만 2,600원이 이월되었으나, 계속년도 연장과 시공자의 공사지연등의 문제해결이 급선무라고 하겠음.

라)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1%에 해당하는 79억 1,303만 1,399원

이였으며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등에 기인함.

예산절감에서는 7억 8,512만 2,000원을 절감하여 목표액 12억 6,541만 8,000원의 62%가 절감되고 예산집행 잔액중에는 예산 100% 미집행 불용처리가 44개 항목, 50%이상이 27개 항목, 총71개 항목 2억 8,849만여원에 달한 금액이 사장화된 현상이라고 봄. 신중한 예산산정으로 예산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마) 잉여금 380억 5,368만 353원중에는 이월금 290억 7,662만원 990원과 국도비집행잔액 5억 1,169만 1,000원이 포함되어 순세계잉여금은 84억 6,536만 8,363원임

(바) 예산전용에 있어

예산전용은 총 16건에 3억 2,772만 7,000원을 감액 전용 하였으나 불필요한 전용, 과다전용, 예산전액 감액, 전용결과 없이 전용등 총 15건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2)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

가) 재정력 지수 : 24.00

군자치단체가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잠재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97보다 3.00이 낮음.

나) 건전성 지수 : 0.965

군 자치단체의 지출총액을 안정적 수입으로 충당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97보다 0.009가 높아졌음.

다) 책임재정지수 : 2.516

군 자치단체의 경상적경비를 자체 재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력정도를 측정한 지표로서 '97보다 0.678이 높아졌음.

3)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

가) 회계년도 구분 미이행

사업소와 일부 읍면에서 회계년도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년도
폐쇄기간(1.1~ 2.28)중 신규년도분 혼합 취급하므로써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나) 보조금 지출액중 일부 정산 미실시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사후 감독이 현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음.

다) 소규모 주민 편의사업비를 지원한 사업비 전액을 다음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한 바 이는 목적인 사업에 불합리하게 책정
하였다고 봄.

라) 선급금 정산에 있어

군도 확포장공사 사업에서 시공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년도
폐쇄기까지 정산되지 않아 지출로 처리되고 다음해 6.30회수
조치한 바 있음.

마) 지출의무 불이행

일부 읍면에서 민방위대장 교육 참석자의 여비실비 보상금과
민방위 경영대회를 개최하였음에도 경비를 지출하지 않는바,
이는 직무소홀로서 민간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4) 예산의 이월에 있어

명시이월의 의회승인 상황과 상위한 것이 14건에 달하며

이중에는 대상이 아닌 국도비 반납대상도 포함되는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사고이월이 원인행위액 미달과
 전년도 사고이월액중 100%불용처리된 사례도 있음.

5) 계속비 이월에 있어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시공자의 공사부진으로 계속사업년도
 연장을 초래한 바 있음.

3. 특별회계

가. 세 입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97)	13,905,681,000	16,723,561,001	16,596,019,073	0	127,543,928
당해년도 ('98)	8,290,718,000	16,630,239,681	16,427,309,796	0	202,929,885

1) 세입결산개요

가) 수납액 164억 2,730만 9,796원은 예산액의 198.1%로서 81억 3,659만 1,796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 특별 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이월금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 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7%로서 전년도 비하여 5%가 낮아졌 는바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데 기인함.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2% 인 2억 292만 9,885원으로서 이는 주로 주차장과 상수도 사용료 미납과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임.

나) 세입결산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으나 농공지구조성및 관리특별회계에서 융자금 회수액 99년도분을 98년분으로 착오

납입하여 년도 폐쇄기가 경과된후에 착오정정한 사실이 있음.

2) 국민주택 용자금 회수관리에 있어서

98년도말 현재 연체액 6억 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금후 연체율 17%를 적용될 때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며 용자금 관리의 전산화 선행과 시중금리를 감안 연체액 해소방안이 강구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3) 불납결손처분 없음.

나. 세 출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전년도이월금	예 비 비 사 용 액	전 용 중·감(△)액
전 년 도 ('97)	13,905,681,000	2,720,190,580	15,000,000	(2,334,000)
당 해 년 도 ('98)	8,290,718,000	8,465,939,660	0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전 년 도 ('97)	16,625,871,580	7,136,785,935	8,465,939,660	1,009,163,015
당 해 년 도 ('98)	16,756,657,660	9,490,961,975	6,217,767,110	1,047,928,575

구 분	잉 여 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전 년 도 ('97)	9,459,231,138	13,982,970	979,308,508
당 해 년 도 ('98)	6,936,347,821	20,881,430	697,699,281

(1) 새출결산개요

예산액은 82억 9,071만 8,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4억 6,593만 9,66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7억 5,665만 7,660원이었으나 예비비 사용액 및 세출예산 전용액은 없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6%에 해당하는 94억 9,096만 1,975원이었으며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28억 7,126만 6,050원, 이는 진부상수도 시설확장공사등 상수도 특별회계 8건이였으며, 사고이월액은 33억 4,650만 1,060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암상수도 시설확장공사등 6건의 공기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25%에 해당하는 10억 4,792만 8,575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잔액에 기인한 것임.

4.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의 검사결과

가. 기금총괄

(단위 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당해년도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수납액	지출액	현재액
계	338,601,130	202,907,223	226,111,223	23,204,000	541,508,353
재해대책 기금	50,238,000	58,529,040	70,733,040	12,204,000	108,767,040
재난관리 기금	0	15,200,000	15,200,000	0	15,200,000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112,182,550	1,500,000	12,500,000	11,000,000	113,682,550
생활보호 기금	17,358,622	2,177,300	2,177,300	0	19,535,922
노인복지 기금	158,821,958	125,500,883	125,500,883	0	284,322,841

1) 기금결산개요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3,860만 1,130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2억 2,611만 1,223원이며 당해년도 지출액은 2,320만 4,000원으로서 재원의 조달은 주로 출연금과 이자수입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폭설 장비의 구입, 적설량 관측장비의 구입, 장학금지급에 기인함.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 4,150만 8,353원으로서 전년도말보다 약2억여원 증가함.

나. 채권현재액

1) 보유채권 현재액은

- '97년말 현재 41억 4,512만 4,860원에서
- 98년도에 6억 9,023만 7,234원이 발생하여
- 98년도말 현재액은 41억 9,419만 9,517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907만 4,711원이 증가하였음.

2) 회계별 98년도말 현재액

회 계 별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합 계	4,194,199,517	808,759,402	1,246,847,350	1,163,272,433	975,320,332	
특 별 회 계	주택사업	3,524,288,627	736,517,862	1,227,918,400	652,882,033	906,970,332
	농공지구 조성및관	97,379,600	17,836,900	18,152,300	61,390,400	0
	주민소득 생활안정	572,531,290	54,404,640	776,650	449,000,000	68,350,000

- 이행기간 도래액 원금, 이자액은 20억 5,560만 6,752원은 '98년말 까지 이미 수납정리가 완료되어야 하나 체납액이 나타나고 있음.
- 이행도래액이 전년도보다 5.8%인 1억 2,620만 7,286원이 감소되고 있으나 이중 이자액은 전년도보다 8.5%인 9,809만 3,410원이 증가되고 원금보다 4억 3,808만 7,948원이 더 많은 이자가 앞으로 큰 문제시 될 것이라고 보며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채무현재액

(1) 채무현재액은

- '97년말 현재액 247억 3,795만원에서
- 98년도 증가액 2억 9,398만 6,000원으로서
 - 98채무행위액 28억 3,095만원
 - 98상환소멸액 25억 3,696만 4,000원이며
-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50억 3,193만 6,000원의 내역은
(단위 천원)

회 계 별	계	원 금	이 자	미 지 급	
합	계	25,031,936	17,849,219	7,182,717	없 음
일반회계		5,201,720	4,555,262	646,458	
특별회계	소 계	19,830,216	13,293,957	6,536,259	
	상수도	15,996,513	11,130,314	4,866,199	
	주택사업	3,547,744	2,033,736	1,514,008	
	농공지구	285,959	129,907	156,052	

(2) 상환재원별 현황

○ '98년도말 현재액

회 계 별	계	원 금	이 자
지 방 채	25,031,936	17,849,219	7,182,717
지 방 비	5,201,720	4,555,262	646,458
실수요자부담	19,830,216	13,293,957	6,536,259

(3) 주택사업 채권, 채무와의 관계

채 권 액	채 무 액	차 액	비 고
3,524,288	3,547,744	△ 23,456	실차액('97:약4억6천만원)은 수익원으로 추정됨.

○ 과제 : 차액해소 방안강구

라. 공유재산

○ 19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 토지 : 1억 4,965만 8,000㎡에 494억 5,530만 4,000원
- 건물 : 3,460만 9,000㎡에 72억 5,919만 1,000원
- 기타 : 24건에 940만원으로서
약 567억 2,389만 5,000원에 상당함.

(1) 용도별 현황

용도별		97년말 현재액	98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49,771,431	56,723,895	6,952,464
행정 재산	계	14,780,920	21,733,282	6,952,362
	공공용재산	7,305,994	13,989,838	6,683,844
	공용재산	7,306,173	7,574,691	268,518
	기업용재산	168,753	168,753	0
보존재산		0	0	0
잡종재산		34,990,511	34,990,613	102

(2) 공유재산 매각 처리에 있어

봉평면 창동리에 공유재산을 분할 납부조건으로 매각계약한 바, 이후 계약해제 한 바 있으나, 분할납부대금은 정산 반환조치한뒤 정수 결정도 취소하여야 함에도 미수납액으로 방치하였음.

마. 물품현재액

-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6억 9,808만 7,000원이고,
- 98년중 신규 취득으로 2억 1,220만 2,000원이 증가하며
- '98년중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4,679만 4,000원이 감소함.

정수	전년도말 현재액	취득(구매)	처분(매각)	관리전환 양여, 기타	98년말 현재액
835	1,532,679	212,202	12,746	34,048	1,698,087

5. 세입세출외 현금

가. 총괄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98 증 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합계	592,877,552	537,092,048	4,020,756,365	3,483,664,317	1,129,969,600
군	488,154,888	156,632,206	2,991,504,898	2,834,872,692	644,787,094
읍면	104,722,664	380,459,842	1,029,251,467	648,791,625	485,182,506

- (1) 세입세출외 현금의 보관금의 증가에 따라 별도 이자율이 높은 예탁금으로 군 본청에서는 군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며, 관련규정에 없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수입증지 판매대, 팩스수수료를 흡수 관리함은 다음면에 모범이 된다고 할 것임.
- (2) 평창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할 금액이 본 현금에 취급하는 것은 분리함이 타당하며 공공요금을 일반회계에서 직접 수불할 대상을 관리하는 것은 이중처리가 되며, 적십자 회비 교부금의 지연처리, 그리고 평창읍상수도 정화목적으로 보광에서 보상한 자금의 사용잔금 처리등의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

6. 지적사항의 종합평가

지정된 제한인력과 기간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정확성을 기하고 공정하게 객관적

판단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러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사항을 지적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예산운용의 방안

- 100% 및 50%이상의 불용액 과다
 - 예산전용의 과다 및 불필요한 전용
 - 지방수입 미수액 처리의 지연
 - 명시이월 사업의 의회승인 사업과의 불일치
 - 채권채무의 이행도래 기간에 있어 실수요자액과의 차액처리 대책 미흡
 - 계속비 사업년도의 연장
 - 보조사업의 사후 감독 미흡
 - 이월사업 선정과 처리상황 불철저 등이며 한편
- 검사과정에서 부족한 전문성등 불충분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하면서 시정과 보완 또는 주의를 촉구하며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향상을 기원하는 견지에서 별첨 지적사항 총19건을 첨부하였음. 지적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 재검토하여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리는 물론 재지적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길 희망함.